

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5일	
신고인 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)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대상 문화유산	명칭				
	종류		수량		
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			
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	[]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 유산이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로 서 건축물의 외관(지 붕을 포함한다) 면적 의 4분의 1 이상에 대 해 디자인, 색채, 재 질 또는 재료 등을 변 경하는 행위	[]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 유산이 「건축법」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 의 구조물·시설물 등 인 경우로서 교량·등 대 등 구조물인 경우 에는 그 외관 면적의 4 분의 1 이상에 대해 디 자인, 색채, 재질 또 는 재료 등을 변경하 는 행위	[]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 유산이 「건축법」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 의 구조물·시설물 등 인 경우로서 터널·동 굴 등 그 외관이 드러 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 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, 색채,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	[]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 유산이 「건축법」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 의 구조물·시설물 등 인 경우로서 무덤·터 ·유적지, 그 밖의 경 유에는 국가등록문화 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 인, 색채,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	
	[]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 유산의 필수보존요소 를 변경하는 행위	[]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 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	[] 근현대동산유산에 속 하는 국가등록문화유 산을 수리하거나 보존 처리하는 행위		
현상변경 사유					
현상변경 부분					
현상변경의 내용 및 실시 방법					
이전 후의 소재지 (이전한 경우)					

(뒤쪽)

소유자 (법인의 경우 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관리단체	명칭	
	주소 (전화번호:)	
현상변경 행위자	업체명	대표자 성명
	소재지 (전화번호:)	
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	착수	
	완료	
소요경비	금액	재원
그 밖의 참고사항		

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.

이
한
문

신고인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(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보존처리계획서(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.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 절차

신고인	경유 기관		처리 기관
	시·군·구 및 시·도		(담당 부서) 국가유산청 (국가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)
신고서 작성	신고 →	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 → 시·도 (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제외)	보고 → 접수 ↓
통보	←	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지, 시·군·구 ← 시·도 (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제외)	통보 ← (지도·조언 및 권고)